

1. 추진전략의 적절성

가. 연구개발 특성을 고려한 추진전략을 적절히 제시하였는가?

(1) 의미

일단 사업목표가 설정되면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하향적 접근방식이 정책결정자가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행체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상향식 접근방식은 참여주체의 전략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¹⁾ 사업 추진전략은 사업 및 해당 분야의 특성 분석을 토대로 목표달성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개발 전략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전략은 사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총체적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조직의 장기적인 목표 결정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결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것'²⁾ 또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쟁우위를 상승시키는 노력'³⁾ 등으로 정의된다.

본 평가질의가 지칭하는 '추진전략'은 전술한 전략의 정의에 부합하되 연구개발의 수행체계 전반을 대체로 포괄한다.⁴⁾ 즉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기술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로부터, 세부활동의 선정·평가·운영계획, 조직 및 관리체계 등 제도적 거버넌스로 간주될 수 있는 내역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대상기술의 선정, 목표 과학기술 수준의 설정, 기술획득방법 등 기술개발계획의 핵심 프레임은 '사업전략'으로서 본 평가질의의 범주에서 제외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추진전략의 수립은 이용가능한 자원과 사업이 처한 여건에 내재된 기회를 어떻게 조화할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업 수행주체가 보유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외부환경이 제공하는 위협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추진전략의 수립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위해서 SWOT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 기술개발의 제반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으므로 추진전략 수립과정에서 시장분석이나 기술동향분석은 사실상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본 평가질의는 사업의 목표, 기술개발 특성, 세부과제 구성 등을 다면적으로 고려하여 목표 달성 및 연구개발 특성을 고려한 추진전략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분석한다. 추진전

1) 남궁근(2014).

2) Chandler, Jr.(1962).

3) Ohmae(1991).

4) 과거 표준지침(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 2014)에서 기술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으로 추진전략 검토가 이원화되었던 것을 본 수행 세부지침에서 통합한 것. 다만 본문에서 명시한 것과 같이, 기존의 '사업전략' 범주와의 분리는 여전히 유효함.

략의 분석 쟁점은 사업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극단적으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조사대상 사업의 연구개발 특성을 감안하여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표 3-1> 추진전략의 적절성 평가질의

평가질의(조사취지)	고려사항	
	기술 지정	기술 비지정
5. 연구개발 특성을 고려한 추진전략을 적절히 제시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선정 기준 및 절차, 성과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추진방안을 적절히 제시하였는가? • 주요 의사결정 체계 및 추진주체 간 역할분담 등 추진체계를 적절히 제시하였는가? • 선행사업이 있는 경우, 선행사업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는가? 	

(2) 분석방향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선의의 경쟁 활성화, 품질 저하 방지, 연구자 의욕 제고 등 특별한 추진전략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목표와 과학기술 분야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과거의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를 살펴보면, 기초·원천연구의 경우 개인연구, 소규모 연구단, 대규모 사업단 등 과제 추진형태의 적절성을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분석하기도 하였다. 추진형태에 따라 과제별 참여 인원, 연구비 규모, 공간적 제약, 연구방향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 사업의 목표와 과학기술적 특성을 분석하여 제시한 추진형태와의 부합성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컨소시엄 구성 시에도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학계, 연구계 등 연구를 총괄하는 기관유형에 따라 중점 연구개발 분야 및 단계, 인프라 구축 수준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 과학기술 분야의 주도 연구그룹과 제안된 연구개발 내용의 부합성 여부를 점검한 사례도 존재한다. 그밖에도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경쟁적인 연구수행을 통해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전략을 적용하는 경우, 중도탈락 과제의 매몰비용을 상회하는 전략의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 내역 제시가 필요하다. 지역별 거점센터에 대한 연구개발 기반시설 구축의 경우 통합과 분산의 효율성 우위 이슈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통합 또는 분산 설치에 대한 각각의 대안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하여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선택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표 3-2> 추진전략 분석 사례

[분석대상]

A 기술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산화 증대를 위해 설계 중소기업 주도의 설계·공정기업 컨소시엄 추진전략을 제시함.

[분석]

① A 기술분야의 기술적 특성 분석

- 고전압대전류의 특수 환경에 적용되는 A 분야는 공정이 중심이 되어 설계를 발전시키는 기술적 특성이 존재함
- 특히, 신소재로 접근하려는 A 분야는 공정의 중요성이 더 높아져서 공정의 노하우가 있어야만 설계가 가능함
- A 분야는 설계보다 공정의 능력, 노하우, 설비 등에 따라 제품의 특성, 성능, 신뢰성, 비용 구조가 좌우됨

②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 분석

-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공정을 보유한 대기업에서 협업을 위해 설계 중소기업에게 주도권을 넘길 가능성이 낮음
- 공정기술의 중요성에 따라 기술적 보안이 존재하는데, 설계와 공정 업체가 분리될 경우 기술적 보안의 이슈를 해결하기 어려움
- A 분야는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이슈인데, 설계와 공정 업체가 분리될 경우 통합 추진 대비 마진을 높일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

③ 해외 선진업체 분석

- 국산화를 위한 경쟁 대상인 A 기술분야의 시장점유율 상위 10개 업체 대부분이 설계와 공정이 합쳐진 통합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며, 설계가 별도로 독립하여 주도하는 사례가 없음
- 시장점유 수준이 높은 경쟁사는 공정기술 중심으로 설계를 통합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①, ②, ③의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설계 중소기업 주도의 설계·공정기업 컨소시엄 추진전략에는 기술적으로 많은 한계가 예상됨. 특히, 우리나라는 A분야의 후발주자인 상황에서 동 사업은 국산화를 목표하는 사업이므로, 국내에서 설계와 공정의 통합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설계 중소기업 주도의 컨소시엄으로 추진할 경우에 예상되는 한계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계획인지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한편,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⁵⁾ 제20조 1,2호는 연구개발 상세기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⁶⁾, 본 평가질의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은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 추진방법(추진전략, 추진체계)과 관련성이 있다. 즉, 사업주체가 사업 시행 시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개발 내용 및 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술 비지정사업은 세부 기술수준의 활동 도출이 어려우므로 기획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 추진 시 구체화된 상세기획 방안이 제시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의 목표와 주요내용이 설정되었으며 이에 부합하는 연구수행 내역이 제시되었는지, 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이 적절히 도출되었는지, 연구결과와 활용에 대한 계획 또한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⁷⁾

나. 과제선정 기준 및 절차, 성과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추진체계를 적절히 제시하였는가?

(1) 의미

사업 추진체계는 사업 및 기술 특성에 따라 경쟁우위의 획득과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 수행체계 및 관련 조직을 구성하는 수단 측면의 추진체계와 제도적·정책적 거버넌스 측면의 추진체계, 과제 및 연구자 선정, 평가 및 관리 계획 등 조직 및 관리체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과제 선정 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세부 기술별로 적정 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과제 선정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⁸⁾. 또한, 과제 선정을 위해 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

5) [시행 2014. 4. 25.]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32호, 2014. 4. 25., 타법개정]

6) 제20조(연구개발 상세기획)

① 공동기획연구에는 연구개발 상세기획(이하 "상세기획"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상세기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연구개발 목표 및 성과지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기술동향 (논문·특허 조사)
3. 연구개발 내용
4. 연구개발 추진방법(추진전략, 추진체계)
5.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자원마련 방안
6. 연구개발 기대성과
7. 연구개발 관련 법·제도, 인프라 관련 장애요인
8. 연구개발 결과의 구체적 활용방안
9. 연구개발 성과관리·평가 방안
10. 기타 효율적인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7) 국회입법조사처(2015).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성,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연구환경 수준(연구인력 및 시설·장비), 연구·시설장비 구축 타당성,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성과의 파급효과, 성과의 활용 가능성(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책임자의 역량 및 윤리 수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본 평가절의는 사업의 세부활동(과제 및 연구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성과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추진체계가 적절히 제시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미한다.

(2) 분석방향

사업목표 달성 관점에서 사업 추진체계, 과제 선정 및 관리계획, 사업 및 연구 성과관리 계획 등이 적절히 제시되었는지 분석하되, 사업특성을 감안한 검토의 주안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업의 주변 환경(기회, 위험)과 가용 자원(과제 참여인원, 연구비 규모, 연구시설·장비)을 분석하여 해당 분야의 과학기술적 특성이 반영된 추진형태 즉 연구개발의 수행체계가 적절히 제시되었는지 분석한다. 기초연구의 경우 개인연구, 소규모 연구단, 대규모 사업단 등 과제 추진형태의 적절성을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검토한다. 이때 해당 과학기술 분야의 주류 연구그룹의 연구개발활동과 조사대상 사업의 관련 내용 간 부합성을 분석할 수도 있다.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복수의 조직이 경쟁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추진체계를 제시한 경우, 중도탈락의 매몰비용을 만회하는 장점으로 사업의 추진주체가 무엇을 제시하였으며, 추진주체의 분석 또는 추정 내역이 적절한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거점센터를 구축하는 경우, 통합 또는 분산 설치에 대한 각각의 대안에 대해 장단점을 비교하여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선택되었는지 분석한다. 사업이 지향하는 과학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자 선정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 사업성과의 활용·확산을 위한 성과관리 계획 역시 적절히 제시되었는지 분석한다.

다. 주요 의사결정 체계 및 추진주체 간 역할분담 등 추진체계를 적절히 제시하였는가?

(1) 의미

사업 추진체계 상의 역할분담이 명확히 제시되었는지,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반드시 참여가 필요한 연구 주체가 추진체계에 포함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분석은 기본적으로 부처가 사업계획 등에서 제시한 사업 추진체계 및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자료의 분석을 통해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규정 및 제도, 사업 준비정도 등을 분석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필요시 추진체계상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사업과 관련이 될 수 있는 이해관계자 또는 조직을 발굴하여, 주체별로 분담 가능한 역할, 협조체계

등에 대해서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민간의 선호도 분석을 입증하기 위해 사업 주관부처가 제시한 기업 참여의향서를 검토할 수도 있다. 관련 기관과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에서는 사업 추진체계에 포함된 기관 간의 사전협조 및 역할분담 여부, 사업 추진과정에서 연계가 필요한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여부를 평가한다. 기획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사업 추진체계에 포함된 기관에 대해서는 교류 현황, 사업 참여의사, 협정 체결 현황 등을 조사하여 협조체계 구축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으며, 개발대상 기술과 부분적으로 유사하거나 연관된 기술을 보유·개발 중인 기관과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조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이밖에도 사업 추진주체(주관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주관기관)의 사업 관리 및 수행 역량이 충분한지, 사업 운영 방안 등이 적절히 제시되었는지, 공동연구기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참여 유인 방안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⁹⁾

본 평가항목에서 검토하는 '추진체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 사업의 수행주체와 참여주체간의(inter-) 거버넌스에 조사의 초점이 맞춰 조사가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사안으로는, 연구개발사업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수직적 자금전달체계와 수평적 협력체계를 포괄한 사업 수행체계와 관련 규정 등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거론할 수 있다. 추진체제의 평가는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수행체계와 절차의 적절성, 그리고 사업 운영방안의 효율성 등을 분석함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건설사업과 달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거버넌스는 복잡 다양하며, 조사대상 연구개발 활동의 여건과 예비타당성조사가 요구된 사업의 사안이 이러한 복잡성을 더욱 고도화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거버넌스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책형성과 집행과정 등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 간에 나타나는 상호의존성, 연계, 네트워크, 협력 그리고 조정을 포함하는 관계"를 가리키며, 거버넌스 메커니즘(governance mechanism)이란 이러한 관계의 형태 또는 관계의 구조를 의미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거버넌스 메커니즘에 대한 고찰이 중요한 것은 한정된 자원을 기반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지배구조, 즉,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 간의 적절한 협력 및 조정 등 구조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기 때문이다.¹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수직적 거버넌스는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부처와 사업을 관리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 그리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연구책임자) 간의 정책 목적 전달 및 달성과 관련된 계약에 의한 자금제공 및 조정체계로 볼 수 있다. 수평적 거버넌스는 사업에 참여하는 부처 간, 연구기관 간, 연

9) 다만 사업의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한 사업 내적(intra-) 추진전략의 검토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조사 결과가 정리되는 것을 권고함.

10) 조현대 외,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체계구조분석 및 정책제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03-27, 2003.12.

구조적 간, 연구자 간 등 사업과 관련된 주요 행위자들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그리고 사업 참여주체와 사업 외부의 기관 및 단체, 국민과의 네트워크 및 소통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정부연구개발예산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유형 하에 '분산위임형 체제'로 배분되어 집행된다. 정부연구개발예산은 주로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배정되고, 이 배정된 금액은 다시 각 소관부처 산하의 연구관리 전문기관 등에서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로 집행된다. 보통 민간 기업이나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연구관리 전문기관¹¹⁾에서 사업공고를 통해 공모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해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한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018년 기준으로 12개 부처에 총 19개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운영 중이었으나, 부처별 1개 기관을 원칙으로 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¹²⁾ 적용으로 본 세부지침의 작성 시점에서 12개 부처·청 12개 기관으로 조정 예정이다. 그 밖의 정부연구개발예산은 별도의 사업단 형태로 운용되는 대규모 연구사업, 우주개발사업 등과 같이 특정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대형 국책연구사업, 국립연구소(국립환경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부처가 직접 수행하는 정책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집행된다.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조정 기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수행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 기능을 지원하고자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의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이 법률이 규정한 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아닌 별도 주체로 이전될 경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 관리·감독의 역할과 연구개발의 역할이 구분된 것처럼 제시되었더라도 실제로는 특정 연구개발조직이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인 관리·감독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연구수행을 병행하는 경우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 금지의 원칙¹³⁾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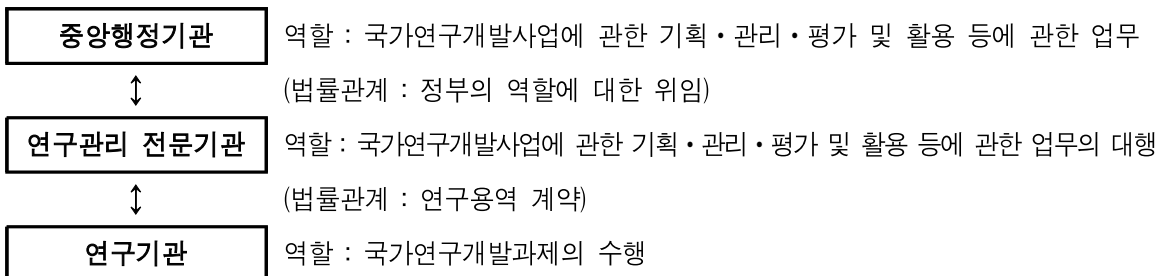
12) 관계부처 합동,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 2018.8.2.

13) 자기계약은 갑(甲)의 대리인 을(乙)이 한편으로는 본인(本人)인 갑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자격으로 갑·을 사이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 쌍방대리는 동일한 법률 행위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이

이처럼 중앙행정기관의 관리·감독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할 경우 납세자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은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이 법령에 근거하여 위임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연구관리 전문기관과 주관기관 사이의 계약을 살펴보면, 주관기관이 되기 위한 특별한 법적 자격요건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에 따라 경쟁입찰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의계약 사유¹⁴⁾ 해당 여부를 평가하여 조사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¹⁵⁾. 기본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어야 하며 수의계약에 의한 선정은 불인정된다. 이 경우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정평가의 절차, 기준, 평가자의 구성 등에서 고의적으로 특정 연구주체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예정하는 요소는 제거¹⁶⁾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은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중심으로 흠결사항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분석방향



[그림 3-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관유형별 역할과 관계

사업 추진체제에 대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부처에서 제시한 사업 추진체제 및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자료들의 분석을 통해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등 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일을 의미함. 이러한 법률행위는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민법」 제124조에서 금지하고 있음.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5) 이러한 제한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역시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임. 즉,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지 수의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

16) 이것이 선정절차나 기준을 두지 않아 사업목표 달성과 관련이 적은 연구주체가 선정되는 것을 방관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당 사업의 거버넌스와 각 주체별 의지, 사업 준비 정도 등을 평가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필요시 추진체계상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사업과 관련이 될 수 있는 이해관계자 또는 조직을 발굴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체별로 분담 가능한 역할과 협조체계 등을 분석할 수 있다.

관련기관과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는 사업 추진체계에 포함된 기관들 간의 사전협조 및 역할분담 여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연계가 필요한 기관들과의 협조체계 구축 여부를 평가한다. 사업 추진체계에는 포함되었으나 기획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들과의 교류 현황, 사업 참여의사 및 협정 체결 현황 등을 조사하여 동 기관들과의 협조체계 구축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요소기술 등에서 부분적으로 유사 또는 연관된 기술을 보유·개발 중인 기관과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반영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은 사업 주관부처를 통해 제시된 조사대상 사업의 거버넌스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처로부터 연구수행주체로 자금이 전달되는 경로상에 위치한 관리기관이 법적으로 부처의 역할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적절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관연구기관과 과제 수행주체가 경쟁공모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주체로 사전 결정된 경우의 현행 법·제도에 저촉되는 사안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다.¹⁷⁾

라. 선행사업이 있는 경우, 선행사업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는가?

(1) 의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효율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 추진된 유사 사업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사업 기획과정에 있어 선행 사업(또는 종료예정 일몰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신규 사업의 추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사업 기획주체는 기존 사업의 성과를 활용·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구개발 수행체계 및 조직 구성, 과제 및 연구자 선정, 성과 평가·관리 등 측면에서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2) 분석방향

조사대상 사업계획이 선행 사업의 성과분석을 수행하였는지,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17) 다만 사업의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한 사업 내적(intra-) 추진전략의 검토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세부 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조사 결과가 정리되는 것을 권고함.

신규 사업의 추진전략을 적절히 수립하였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연구과제 선정·관리·평가, 성과 평가·활용·확산 계획 등 추진체계가 적절히 제시되었는지 분석한다. 기획주체는 선행사업의 추진방향, 투입 예산, 세부사업별 사업 구조 및 내용, 추진 전략 및 체계, 운영관리 방식, 사후평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행사업이 진행된 이력을 분석하고, 선행사업에서 달성하였거나 달성 예정인 정량·정성적 성과 분석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사업에서 지적된 사항을 해당 사업의 기획과정에 어떻게 개선하여 반영하였는지, 부처 자체평가 및 중간평가 결과를 활용하였는지, 선행사업 결과와 연계되도록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주체는 선행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가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그 결과를 반영하였는지, 사업의 목표달성 관점에서 과제선정·관리·평가, 성과 활용·확산 계획 등 신규 사업의 추진 전략 적절히 제시되었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다.